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가합50477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8. 14.

판결 선고2018. 10.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579,589원 및 그 중 484,057,494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3. 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10. 12. 접수 제719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 8. 6., 2013. 10. 23., 2015. 5. 26. 각 신용보증약정(차례로 '제1보증약정', '제2보증약정', '제3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보증약정	2012. 8. 6.	D	90,000,000원(100,000,000원)	2013. 8. 6.
제2보증약정	2013. 10. 23.	E	180,000,000원(200,000,000원)	2014. 10. 23.
제3보증약정	2015. 5. 26.	F	212,500,000원(250,000,000원)	2015. 5. 26.

이후 제1, 2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8. 8. 3.으로, 제3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8. 5. 25.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①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피고 회사와 B은 이의 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0호),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2016. 2. 1.부터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있다(제10조).

나.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한 것이 원인이 되어 2017. 10. 11.경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의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청구에 따라 2017. 12. 19.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487,764,494원(= 제1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91,087,298원 + 제2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81,156,671원 + 제3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214,520,52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제1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중 3,707,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1,015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2. 6.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521,08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C은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2878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7. 9. 25. 열린 조정기일에서 '피고 B, C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주며, 피고 B, C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하 위 조정 중 재산분할 부분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7. 10. 12. 피고 C에게 2017. 9.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19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84,579,589원[= 잔존 대위변제금 484,057,494원(= 대위변제금 487,764,494원 - 회수금 3,707,000원) + 확정손해금 1,015원 + 가처분신청비용 521,080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484,057,494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인 2017. 12. 19.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8. 3. 7.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혼인 생활 중 자신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과 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인 2017. 9. 25.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별도로 부담하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2017. 8. 11.경부터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일로부터 17일 후인 2017. 10. 11.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7. 12. 19. 중소기업은행에 487,764,49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사후구상금 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 등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최대 추정 가액이 1억 9,5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 소극재산은 아래 <표>기재와 같이 합계 1,015,629,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14. 2. 7.	10,000,000원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14. 8. 22.	105,000,000원
3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채무	2017. 3. 14.	50,000,000원
4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2012. 5. 3.	482,500,000원
5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012. 5. 12.	206,149,000원
6	주식회사 G에 대한 보증채무	2016. 8. 8.	39,980,000원
7	주식회사 I에 대한 보증채무	2016. 12. 21.	12,000,000원

1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14. 2. 7.	10,000,000원
8	경기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2016. 12. 21.	90,000,000원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J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17. 10. 12.	20,000,000원
합계	1,015,629,000원		

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또한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혼인기간 중 피고 C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채무 중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피고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금 채무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채무여서 피고 C이 용인하였던 채무라고 보이는 점, 피고 C이 별거를 시작한 2014. 8.경 까지 피고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이 피고 B과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로서 분배받을 몫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C이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공제한 후 잔액이 존재하게 되는 이상[가격자문컨설팅(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9,500만 원으로 인정되는 바, 그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 1억 2,500만 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5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을 공제하면 최소 2,500만에서 최대 7,000만 원이 남게 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이 2017. 10.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 C의 악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존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피고 B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7. 9. 25.자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춘호

판사김영환

판사육영아

별지